



장사는 농이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18.
제공자 : 농림수산물부 소비안전정책과
과 장 : 배 호 열
사무관 : 김 평 전
전 화 : 500-2097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1P)

이 자료는 2011년 1월 1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 계도기간 종료, 본격 단속 실시

- 빵, 떡, 제과·제빵, 피자, 주류, 식염 등 67개 품목이 중점 대상 -

□ 농림수산물부부는 지난해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빵, 떡, 주류, 식염 등)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신규 대상품목

- 음식점 : 쌀·배추김치(100㎡ 이상→모든음식점),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는 모든음식점
- 농산물 가공품 :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
- 식염 :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
- 농산물 :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이들 신규품목에 대해 전국 순회교육, 홍보자료 배포, 현장 지도활동 등 교육·홍보를 겸한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벌위주의 단속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알고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원산지 신규 적용 품목 중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오는 2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 '9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07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과 같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29-4702)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신고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5만원 ~ 200만원)이 지급된다.

【참 고】

농수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신규대상 품목

□ 농수산물 및 가공품 : 67개 품목

농산물(30)	벼, 쌀, 찰벼, 호밀, 귀리, 아콘,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풋고추, 파리고추, 홍고추, 피망, 브로콜리, 파프리카,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도토리,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묘삼, 마, 메추리고기, 말고기
국 내 가공품(30)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만두류,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기타면류,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김치속,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일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수 입 가공품(1)	누에번데기
식 염(6)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 음식점 : 4개 품목

- 쌀·배추김치(100㎡이상 → 모든음식점),
-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는 모든음식점